관리년도 2022년 1월~12월	결재	담당자	관리자

우리기관
운영규정
개요

이래노인복지센터

1. 개요총괄

운영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참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참조
이용료 산정방식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참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참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참조
기타	자세한 운영규정은 첨부된 우리기관 운영규정을 참조하세요.

2.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지 등)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이래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2-30230-00205			
대표자	지석연				시설장				장한별			
지정/신고일자	2019.07.31				지정형태				방문요양 / 방문목욕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	요양보호사2급	사무원	기타
69	1		2						67			
기관연락처	042-624-0188				이메일				goldtree3810@naver.com			

팩스번호	042-624-0189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사이트 블로그
사업장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94, 1층 (송촌동)		
주차시설	건물 앞 주차	교통편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314번, 620번 송촌119 정류소 버스 103번 동춘당 정류소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 및 인근지역		
영업일 (영업 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4. 재가기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의료, 감경 (40%, 60%)	9% 또는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폐지

(단, 1등급, 2등급 유지)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1·2등급만 이용 가능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7,840	47,450	57,0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4,240	78,580	70,8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 전문인배상책임 가입현황

보험회사명	메리츠배상책임보험화재	가입상품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보험가입일	2021.08.10

6. 프로그램 운영현황

	종류	제목	대상(명)	주기(시간)	장소
프로그램 운영사항					

7. 급여비용 가산 지급 현황

급여비용가산 지급 기관	□ 예 □ 아니요
급여비용가산 지급기관 (공대동의여부)	□ 예 □ 아니요